

■ 논 단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적 문제와 정책적 과제*

-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Fit and Proper Test)를 중심으로 -

이 영 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호사 / 법학박사

요 약 문

최근 금융지주회사 CEO의 장기 연임, 낙하산 인사,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적격성이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금융회사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그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임원의 적격성 요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영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Fit and Proper Test)를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영국의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요건 및 운용 현황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사외이사 외에는 임원에 대하여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적격성 심사의무가 법상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금융회사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선임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지배법상 금융회사는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의무와 공시 및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를 지는데, 의무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벌칙이 경미하고 감독당국의 제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임원에 대하여 엄격한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 요건을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동 개정법률은 금융회사는 임원의 선임 또는 직책변경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개정법률은 이러한 일반 규정 외에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실제 임원의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임원의 적격성 요건 심사시 검토하여

* 본 논문은 필자가 작성한 “해외의 금융회사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와 시사점”, 「KIF 연구보고서」 2023-06, 2023. 11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원의 적격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의무 및 보고·공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벌칙 및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임원으로 선임된 후 적격하지 않음이 드러난 때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금융회사, 임원, 임원의 자격요건, 적격성 심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目 次> —

I. 글에 들어가며	IV. 우리나라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 관련한 과제
II. 영국의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 (Fit and Proper Test)	1.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비교
1. 개요	2.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방안
2.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MCR)	
III.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V. 글을 마치며
1. 개요	
2.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용	

I. 글에 들어가며

최근 금융지주회사 CEO의 장기 연임, 낙하산 인사,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어 왔다. 한번 CEO로 선임되면 이사회 내 영향력을 강화하여 연임하는 셀프 연임과 정부 측 인사가 오는 낙하산 인사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룹 내 계열 금융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적격성이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만들고 있다.

금융회사도 사기업이므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임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적 기관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매우 크다. 은행이 부실화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키는 등 단순한 사기업과 달리 정부의 보조를 받는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일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¹⁾ 따라서 단순히 사기업으로서 주주의 이익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뢰성 등 사회적 이익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문제는 보다 엄격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주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 이외의 요소나 영향력이 작용하여 금융회사의 CEO가 선임되고 그의 영향에 따라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주주의 이익 및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경영자로서 적합한 사람인지에 관한 적격성 요건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시 그의 적격성 여부는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얼마만큼 철저히 검증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적격자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Fit and Proper Test)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고위 경영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하고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적격성 구비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과 비슷하게 싱가포르, 홍콩, EU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국가 중 영국의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하여 어떠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시 고려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운영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만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여 선임하고 사후에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 임원에게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심사과정에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과 제재가 미약한

1)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1헌바35 결정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를 규정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관하여 “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및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예금자보호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이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입법목적이다.”라고 실시하였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제도로는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 법률시행시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 요건을 부과하게 되었지만 세부사항 등 구체적 기준이 미비되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요건과 심사에 대하여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요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짚어 보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영국의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소개하고, III장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IV장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영국과 비교할 때 보완할 점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 V장에서 글을 마친다.

II. 영국의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Fit and Proper Test)

1. 개요

영국은 대표적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하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정착되었다. 1995년 한 직원의 일탈행위로 은행이 도산한 베어링스(Barings) 은행 파산사건²⁾이 발생하자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에 은행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Approved Person Regime, “APR”)를 도입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후 이를 개선하여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SMCR”)를 시행하였다.³⁾ SMCR은 2016년 3월 은행에 우선 적용되었고, 2018년 12월 보험회사로, 2019년 12월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단독 관할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FSMA에 따라 인가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다.⁴⁾ SMCR은 다수의 금융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회사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회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세 가지

2) 베어링스 은행의 직원 닉 리슨(Nick Leeson)의 투기적 선물거래로 베어링스 은행은 2조원의 손실을 입고 도산하였다.

3) 현재 APR은 SMCR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통제기능(controlled function)에 대하여 적용된다. 예컨대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회사를 위하여 규제활동을 하는 선임대표자(appointed representatives)의 경우 APR의 적용대상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FCA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FCA, “The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Guide for FCA solo-regulated firms”, 2019(“FCA (2019)”), p. 5).

4) FCA,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2015. 7. 5(updated 2023. 3. 30).

<https://www.fca.org.uk/firms/senior-managers-certification-regime>(2024. 1. 5. 방문)(“FCA,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유형(핵심회사(core firm), 제한범위회사(limited scope firm), 강화회사(enhanced firm))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회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고위 경영기능의 종류를 다르게 정하는 등 규제수준을 달리 하고 있다.⁵⁾

SMCR은 2013년 의회 은행기준위원회(Parliamentary Commission on Banking Standards)가 발표한 보고서(Report of the Parliamentary Commission on Banking Standards - Changing banking for good, 2013)에 기반한 것으로, 2012년 LIBOR 조작 스캔들을 겪으면서 금융회사의 기만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주요 임직원이 실제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자 새로운 행위준칙을 마련하여 개별 임직원의 책임을 분명히 정하고 개별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⁶⁾ 이를 위해 SMCR은 고위 경영자 제도(Senior Managers Regime) 및 인증제도(Certification Regime), 행위규칙(Conduct Rule)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⁷⁾ 고위 경영자 제도와 인증제도는 임직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것이고, 행위규칙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준칙을 정하는 것이다.

FSMA에 따라 영국의 양대 금융감독기관인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이 각각 FCA Handbook과 PRA Rulebook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감독규정은 감독대상기관의 임직원 적격성 심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일치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 감독규정을 토대로 영국의 SMCR 중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격성 심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본 유형인 핵심회사(core firm)에 대한 규제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⁸⁾

2.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MCR)

금융회사는 주요 임직원 즉 고위 경영자(Senior Managers)와 인증기능(Certification Function)을 수행하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대상자가 적격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선임 후 매년 최소 1회 적격성 구비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5) 핵심회사(core firm)는 제한범위회사(limited scope firm)나 강화회사(enhanced firm)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들을 포괄하는데 대부분 금융회사는 핵심회사에 해당된다. 제한범위회사는 제한적인 범위의 인가를 받은 회사 등 업무내용이 제한적인 곳으로서, 핵심회사에 비하여 준수요건이 적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고위경영기능(SMF)도 가장 적다. 강화회사는 고객이나 시장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회사로서 자산·수익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이며,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FCA Handbook SYSC23 Annex 1).

6) FCA,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7) FCA Handbook SYSC 23.3.1.

8) 예컨대 SMCR에서 금융회사가 고위경영기능(SMF)을 수행하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 형사기록을 확인하고 규제 참고사항 조회(regulatory reference)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한범위회사의 경우 단독 트레이더(sole trader) 등 일부 인력은 고위경영기능에 해당되더라도 형사기록 확인 및 규제 참고사항 조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다(FCA (2019), p. 43).

고위 경영자의 경우, 회사의 자체적인 심사 외에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 및 허가절차가 추가된다. 이처럼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심사체계는 ‘고위 경영자’와 ‘인증기능’으로 나누어 달리 운용되고 있다. 이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위 경영자 제도(Senior Managers Regime)

(1) 고위 경영자

고위 경영자란 FCA 또는 PRA가 정하는 고위 경영기능(Senior Management Function, “SMF”)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전에 FCA 또는 PRA로부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규정에서는 SMF 목록을 만들어 어떤 기능이 고위 경영기능에 해당하여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 및 허가 대상인지를 명시하고 있다.⁹⁾ 여기에는 대표이사, 최고 재무기능, 최고운영기능 등 핵심 집행기능과 위험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위원회의 장, 준법감사기능, 자금세탁보고기능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감독규정에 명시된 SMF를 담당할 자를 모두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회사, 제한회사 및 강화회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독규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고위 경영기능을 담당할 자를 선임하면 된다. 예컨대, SMF1(Chief Executive)을 담당할 CEO의 선임은 핵심회사와 강화회사 모두에게 요구되나, SMF2(Chief Finance), SMF4(Chief Risk), SMF5(Head of Internal Audit), SMF10(Chair of the Risk Committee)와 같은 것은 강화회사만 담당 임원 선임이 의무사항이다. 선임이 의무적인 경우 회사는 자체적으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한 후 감독당국에 신청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정상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필요에 따라 어떤 SMF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는 직책과 상관없이 담당 직무가 고위 경영기능인지 여부에 따라 감독당국의 허가 대상인지가 정해진다. 그 결과 예컨대 상시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상근이사(non-executive director)의 경우 일률적으로 허가대상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위원회 의장(SMF10), 감사위원회 의장(SMF11) 등의 SMF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대상이 된다.¹⁰⁾ 이처럼 영국은 직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능위주의 규제는 유연하고 규제목적에 잘 부합한다는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어떤 직무가 고위 경영기능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한 판단을 회사가 스스로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로서

9) FCA Handbook SUP 10C.4.3.

10) FCA Handbook SUP 10C.5A.

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2) 회사의 적격성 심사

회사가 고위 경영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체적으로 적격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체 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감독당국에 심사를 신청한다.¹¹⁾

회사는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구비, 교육 이수, 일정 수준의 능력 보유 및 인적 품성(personal characteristics)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¹²⁾ 그리고 회사는 후보자의 형사기록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이전 직장에 규제 참고사항 조회(regulatory reference)를 하여야 한다.¹³⁾ 영국에서는 금융회사가 고위 경영자를 선임할 때 형사기록을 확인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회사는 담당 기관인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및 Disclosure Scotland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형사기록을 확인한다.¹⁴⁾ 그리고 규제 참고사항 조회(regulatory reference)란 회사가 후보자의 현재 및 과거 6년 동안의 고용주를 접촉하여 후보자의 과거 징계 이력 등 적격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¹⁵⁾ 회사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양식¹⁶⁾에 따라 이전 고용주에게 조회를 하는데, 대상자가 이전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었으며 근무기간 중 적격하지 않다고 인정된 적이 있는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밖에 적격성 여부의 평가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른 회사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감독규정은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회사는 규제 참고사항 조회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취득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의무적 조회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 다른 금융회사로 이직하여 금융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없애기 위함이다.¹⁸⁾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중요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은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평판에 위험이 생길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금융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을 철저히 관리하여 신뢰를 제고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규제 참고사항 조회는 금융회사가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실질

11) PRA Rulebook: Fitness and Propriety 2.1.

12) FCA, Fit and Proper test for Employees and Senior Personnel sourcebook ("Fit sourcebook") 1.2.4, 2023; PRA Rulebook: Fitness and Propriety 2.6.

13) FCA Handbook SYSC 23.3.1, SUP 10C.10.16R, SYSC22; PRA Rulebook: Fitness and Propriety 2.7(1), 5.1.

14) FCA Handbook SUP 10C.10.16R, SUP 10C.10.17G.

15) FCA Handbook Chapter 12; PRA Rulebook: Fitness and Propriety 5.1.

16) FCA Handbook SYSC 22 Annex 1; PRA Rulebook: Fitness and Propriety 7.1.

17) PRA Rulebook: Fitness and Propriety 2.9.

18) PRA, Evaluation of the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2020. 12("PRA (2020)"), p. 9,

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PRA가 발간한 SMCR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금융회사 중 약 85%가 규제 참고사항 조회를 통해 대상자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답변하였다.¹⁹⁾

(3)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 및 허가

회사는 자체적으로 검증하여 적격한 후보자를 선정한 후 감독당국에 그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허가를 신청한다. 감독당국이 적격성 심사시 검토하는 주요 항목은 인성, 업무능력, 재무건전성 등으로, 감독규정은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1) 정직성(honesty), 진실성(integrity) 및 평판(reputation) (2) 능력과 역량(competence and capability) (3) 재무건전성(financial soundness).²⁰⁾ 그리고 감독규정에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표 1>). 다만 이 세 가지 항목을 주로 본다는 것이지 이에 한정하여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고려사항들 또한 한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감독당국이 판단하여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²¹⁾ 그리고 비례성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활동과 금융서비스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을 토대로 후보자가 경영진 내에서 맡을 역할과 그에 따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고려한다.²²⁾

<표 1> 영국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서의 고려사항

항목	고려사항
정직성, 진실성 및 평판 ²³⁾	·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²⁴⁾ · 특히 투자 기타 금융업, 위법행위(misconduct), 사기, 법인(body corporate)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민사상 절차에서 부정적 사항이 확인되거나 화해(settlement)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감독기관, 청산 및 거래소, 전문기관(professional body) 또는 정부기관의 검사 또는 징계 절차에 회부되거나 면담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징계 또는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감독시스템이나 감독기관, 청산 및 거래소, 전문기관(professional body) 또는 정부기관의 기준 및 요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규제행위(regulated activities)와 관련하여 정당한 고발이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19) PRA (2020), p. 15.

20) Fit sourcebook 1.3.1B.

21) Fit sourcebook 2.1.1, 2.2.2, 2.3.1.

22) Fit sourcebook 1.3.2.

항목	고려사항
	- 어떤 거래나 사업을 하거나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 인가, 회원(membership) 또는 면허(license)가 거절되었거나 취소 또는 퇴출된 회사, 파트너십 기타 조직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면허, 등록, 인가가 취소되어 그러한 면허, 등록, 인가가 필요한 거래, 사업 또는 직업을 수행할 권리가 거절된 적이 있는지 여부 - 도산, 청산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업의 이사, 파트너, 기타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관여한 사업이 감독당국, 전문기관(professional body) 또는 법원에 의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검사, 제재, 견책, 정지 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신뢰, 신인관계의 선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나 고용으로부터 해임되거나 사임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 - 이사 또는 경영직을 수행하는 자격이 박탈된 적이 있는지 여부 - 감독당국과의 모든 행위시 정직하고 진실하였는지, 감독시스템 및 법적, 감독적, 직업적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할 준비와 의향이 있는지 여부
능력과 역량 ²⁵⁾	- 수행할 직무기능과 관련한 FCA의 교육 및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 경력 및 교육 사항이 수행할 직무기능에 적절한지 여부 - 의무와 책임 이행을 다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가지는지 여부
재무건전성 ²⁶⁾	- 영국 또는 그 밖의 곳에서 채무 관련 판결 또는 판정을 받고 합리적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 - 영국 또는 그 밖의 곳에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약, 파산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파산제한명령(임시명령 포함)을 받았거나 이러한 절차에서 자산이 가압류된 적이 있는지 여부

(4) 적격성 요건의 계속적 평가

회사는 감독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 고위 경영자를 선임한 후, 매년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²⁷⁾ 고위 경영자의 선임시 적격성을 일회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23) Fit sourcebook 2.1.3. 각 사항은 감독 시스템과 관련된 범위에서 고려된다. 예컨대, 후보자에게 어떤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곧바로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Fit sourcebook, 2.1.1).

24) 특히 부정직, 사기적 위법행위, 금융 범죄와 회사, 주택건설조합(building societies), 산업공제조합(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신용조합(credit union), 친목조합(friendly societies), 은행 기타 금융서비스, 도산, 소비자 신용회사(consumer credit company), 보험,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시장조작, 내부자거래 등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를 고려대상으로 한다.

25) Fit sourcebook 2.2.1. 후보자가 약물, 알콜 등 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고 또는 정직된 경우 FCA는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점이 해당 기능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서만 고려하여야 한다(Fit sourcebook 2.2.2).

26) Fit sourcebook 2.3.1. 재무적 상태가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FCA는 일반적으로 후보자에게 자산 및 채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는다(Fit sourcebook 2.3.2).

선임 후에도 매년 확인하여 적격성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고위 경영자를 선임한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선임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적격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고위 경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감독당국이 허가를 철회할 만한 사정이 생겼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사정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 경우 감독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²⁸⁾ 감독당국은 어떤 사람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기존에 부여한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²⁹⁾

나. 인증 제도(Certification Regime)

(1) 인증기능(Certification Function)

인증기능(Certification Function)이란 회사나 고객에게 중대한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기능(significant-harm function)을 말한다.³⁰⁾ FCA 규정은 어떤 기능이 인증기능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³¹⁾ 여기에는 회사의 시스템 및 통제 운영의 효율성 감시, 상위 관리기능, 업무 수행에 자격요건이 부과되는 기능, 인증직원의 관리·감독, 중요위험 부과 기능, 고객거래,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이 포함된다.³²⁾

인증 제도는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직원은 FSMA section 63E(9)의 정의에 따른다. 동 조항은 직원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하고 있어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 이외에도 업무수탁자, 컨설턴트 등도 포함된다.³³⁾

직원 한 명이 여러 인증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각 기능별로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고위 경영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인증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기능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투자자문회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SMF3(Executive Director)과 고객거래 기능(Client Dealing Function)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고위 경영기능에 대한 감독당국의 심사 및 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회사의 고객거래 기능 수행을 위한

27) FCA Handbook SYSC 23.3.3G.

28) FSMA 63(2A); Fit sourcebook 1.3.4A; FCA Handbook SUP 10C.14.18.

29) FSMA 63(1); Fit sourcebook 1.2.3A.

30) FSMA Section 63(E).

31) PRA 규정은 따로 인증기능 목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중대한 위험감수자(significant risk taker)가 회사의 규제활동에 관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능에 해당한다는 개념적 규정을 두고 있다(PRA Rulebook: Fitness and Propriety 2.2).

32) FCA Handbook SYSC 27.7.3.

33) Grania Baird and Katy Ruddell, "Overview of the Senior Managers & Certification Regime for FCA solo-regulated firms", FARRE&Co, 2019. 7. 19.

<https://www.farrer.co.uk/news-and-insights/overview-of-the-senior-managers-certification-regime-for-fca-solo-regulated-firms/>(2024. 1. 5. 방문); FCA (2019), p. 32.

자체적인 적격성 인증절차도 거쳐야 한다.

(2) 회사의 적격성 심사

인증기능을 담당할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회사는 적격성 심사를 하여 해당 사람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증기능의 경우 적격성 심사는 회사만 하면 되고 따로 감독당국의 심사나 허가는 거치지 않는다. SMCR 이전 APR 제도하에서 허가 대상이었던 것 중 일부를 인증기능으로 분류하여 회사에 의한 적격성 인증으로 대체한 것이다. 과거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많은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및 허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보아 감독당국의 직접적 관여는 핵심적인 고위 경영기능에 집중하기로 하였다.³⁴⁾

회사는 인증기능 수행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자가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1) 자격요건의 구비 (2) 교육 이수 (3) 일정 수준의 능력 보유 (4) 개인적 품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심사한다.³⁵⁾ 그리고 대상자의 현재 또는 과거 6년 동안의 고용주에 대하여 규제 참고사항 조회(regulatory reference)를 하여 징계 등 이력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의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용 후에도 계속적으로 해당 직원이 인증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격함을 확인하고 매년 최소 1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³⁶⁾ 회사는 이러한 인증서 갱신없이 해당 직원이 인증기능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다해야 한다.³⁷⁾

다. 위반시 제재 등 조치

(1) 제재

FSMA는 인가된 금융회사가 관련 요건에 위반한 경우 감독당국은 견책, 벌금 부과, 인가 정지·취소 등을 할 수 있고, 관련 임직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⁸⁾ 따라서 금융회사가 임직원 고용시 적격성 심사요건에 위반한 때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 경영기능 등 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³⁹⁾ 다만 실제 적격성 심사요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이나 대표이사 등 경영자를 제재

34) Parliamentary Commission on Banking Standards, Report of the Parliamentary Commission on Banking Standards - Changing banking for good, 2013, p. 35.

35) FSMA section 63F(2).

36) FSMA section 63F(1), (5).

37) FSMA section 63E(1).

38) FSMA sections 59, 66, 205, 206, 206A.

39) FSMA sections 63A.

한 사례는 거의 없다.⁴⁰⁾

(2) 허가 철회 및 향후 규제활동 금지

허가를 받아 임원으로 선임된 후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은 기존에 부여했던 허가를 철회하고 향후 규제대상 업무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⁴¹⁾ 실제 이러한 이유로 허가가 철회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⁴²⁾ 금융회사는 대상자의 허가가 철회되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운영현황

감독당국은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류와 자료, 인터뷰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PRA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중 약 5% 정도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승인비율은 높은 편으로 2020년 1월 ~ 9월 기간 동안 PRA가 한 1244 건의 심사 중 1146 건이 승인되고 98 건이 거부 내지 철회되었다.⁴³⁾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결정 통지문(decision notice)은 감독당국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거절사례는 다양한데, 신청서류나 정보가 미비되어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⁴⁴⁾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폭행, 성범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⁴⁵⁾ 소득세 신고 누락 등 탈세행위를 한 경우,⁴⁶⁾ 대상자가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도입 및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⁴⁷⁾ 등이 있다.⁴⁸⁾

40) 2016년 3월 SMCR 제도 시행 후 2020년까지 감독당국은 동 제도 위반에 관하여 34건의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한 건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Bovill, "Only 34 investigations and one enforcement action after four and a half years of SMCR", 2020. 10. 27. <https://www.bovill.com/uk-europe/only-34-investigations-and-one-enforcement-action-after-four-and-a-half-years-of-smcr/> (2024. 1. 5. 방문).

41) FSMA sections 63.

42) 허가를 받고 금융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고객과 상담 중 성적 발언을 하고 성행위를 할 의도로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미성년자 유인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FCA, Final Notice: Jon Frensham in Frensham Wealth Limited, 2021. 9. 17) 등 개별 사례들은 KIF 연구보고서 2023-06(해외의 금융회사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 11), 18-21면 참고.

43) PRA (2020), p. 14. 회사는 공식적으로 거부되기 전에 자진하여 철회할 수 있어 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4) FCA, Final Notice: Charles Breeden in Motor Company Ltd, 2022. 3; FCA, Final Notice: A & A Windows Direct Limited, 2021. 11. 5. 등.

45) FCA, Final Notice: Jon Frensham, 2021. 9. 17; FCA, Final Notice: Ashkan Zahedian, 2022. 11. 14; FCA, Final Notice: Shaffarat Parvez, 2021. 10. 6. 등.

46) FCA, Final Notice: Anthony George, 2021. 9. 24.

47) FCA, Decision Notice: Markos Markou and Financial Solutions (Euro) Limited, 2021. 1. 29.

48) 이들 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거절 사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IF 연구보고서 2023-06(해외의 금융회사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3. 11), 16-22면 참고.

III.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1. 개요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5조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제6조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 외에는 금융회사 임원의 요건을 적격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적극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2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 요건을 부과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임원선임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임원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요건(동법 제17조)과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후보추천 절차와 자격요건 확인 후 임원을 선임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한 후에는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를 진다.

2.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용

가. 적용대상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등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동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하고,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제4호).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⁴⁹⁾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공식적으로 이사는 아니지만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이사에 대하여 적용

49)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되고, 이사로 간주하여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주 대표소송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상법 제401조의2).

되는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이들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및 그 밖의 규제⁵⁰⁾를 적용하고 있다.

나. 자격요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제6조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임원은 제5조 제1항⁵¹⁾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적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외이사는 제6조 제1항에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동조 제3항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여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적격성 요건으로서 경험 및 지식 등 업무능력에 관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제5조가 함께 적용된다. 한편 임원 중 상근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사외이사에 관한 조항인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된다(법 제19조 제10항). 그 결과 이들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모두 적용되게 된다.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직을 잃게 된다(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⁵²⁾

50)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35조 제2항(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

5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2) 단, 임원이 법 제5조 제1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표 2〉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소극적 요건(결격사유)	적극적 요건	법조문
임원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법 제5조 제1항
사외이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	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 3항, 시행령 제8조 제4항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	임원의 결격사유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없음	법 제 19조 제10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결국 현재는 법령상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 외에는 사외이사에 한하여 일정한 내용의 적격성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가 하면 되고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들이 이관되기 이전 구 은행법(2016. 7. 30. 시행, 법률 제14129호) 제18조 제2항은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은행이 은행장 후보자 및 상근감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임원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동시에 금융회사 인사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규정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삭제되어 감독당국의 임원의 적격성 사전 확인 절차는 더 이상 운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적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없앴다고 하여도,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요건 자체를 삭제한 것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그리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임원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 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다.⁵³⁾

예외로 한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53)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공적 기능과 금융회사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중요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2023. 6. 2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며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현재의 소극적 결격요건 외에 책무수행의 적극적 요건(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을 신설하고, 금융회사는 임원의 신규 선임시 뿐만 아니라 기존 임원의 책무구조도상 직책 변경시에도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은 금융회사의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각 임원의 소관 영역과 책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⁵⁴⁾를 마련하도록 하고, 책무구조도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금융경력 등 금융전문성과 업무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 적극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⁵⁵⁾ 임원에 대하여 적격성 요건을 부과하기 위해 제5조 제3항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4)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기능별로 책무를 정하여 명확히 한 것이다. 영국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고위경영기능(SMF)을 담당하는 임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 및 승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개정법률은 이러한 해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였다(고상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124376호)”, 정무위원회, 2023. 11. 2. 13-14면).

을 신설하여 “.. 임원은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7조 제1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직책을 변경하려는 등의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개정법률은 임원의 적극적 요건을 신설하고 금융회사가 임원 선임 및 임원의 직책변경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도록 하여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이다.⁵⁶⁾ 다만 개정법률은 이러한 기본적 사항 외에 적격성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시 후보자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사외이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제6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는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후 그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후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 확인의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후보자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사외이사의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확인의무는 임원의 선임시에 이행하면 되고, 선임 후 계속적 확인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금융회사가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43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하여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중지명령,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주의 등이 가능하고,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요구, 6개월 내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가능하다(법 제34, 35조).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임원의 선임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⁵⁷⁾

(2) 공시 및 보고의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후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선임사실, 자격요건 적합 여부,

55) 고상근, 앞의 글, 13-14면.

56) 고상근, 앞의 글, 43-44면.

5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3. 3/4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 해임의 적정성 점검결과”, 2013. 12. 13, 2면.

임원의 임기·담당하는 업무·직위에 대한 사항 등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지체없이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3조 제2항).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43조 제2항 제1의2호). 또한 금융회사 및 관련 임원에 대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제재를 내릴 수 있음은 위 1)의 자격요건 확인의무의 경우와 같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선임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시 기관주의, 전책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⁵⁸⁾

IV. 우리나라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과제

1.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비교

영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홍콩, EU 등 여러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임원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감독당국이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고위 임원의 적격성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외의 적격성 심사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고위 임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감독당국이 후보자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허가없이 고위 임원을 선임하여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 선임한 후에도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불만만 사정이 생긴 때에는 감독당국이 재평가하여 부적격시 해당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영국은 가장 엄격하고 광범위한 내용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대 금융감독기구인 FCA와 PRA가 감독규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격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당 임직원의 적격성 심사를 하여야 하고, 이 중 고위 경영자(Senior Managers)는 감독당국이 직접 심사를 하고 사전승인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감독당국은 후보자가 정직성, 진실성 및 평판, 능력 및 역량,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임을 허가한다. 금융회사는 허가된 자를 선임한 후 매년 적격성 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인증기능(Certificate Function)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58) 금융감독원은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이 임원 2명 선임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연보고 하였으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의 공시항목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그 밖에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범위만 사실등과 함께,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에게 주의를 주었다(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제재내용 공개안, 2023. 5. 10).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고용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한 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고용 후에도 금융회사는 매년 적격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만일 금융회사가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적격한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및 당해 임직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이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허가를 철회하여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상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임원은 동법 제5조에서 소극적 요건 즉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이와 함께 제6조에서 적극적 요건 및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즉 동법상 사외이사 외에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결격사유만 정하고 있고 따로 적격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은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임원의 적격성 요건으로서 부과할 예정임은 III. 2. 나.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영국에서는 적격성 심사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검토할 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규모와 복잡성, 후보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국은 적격성 요건을 여러 가지 점에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직성, 진실성, 평판”, “능력 및 역량”, “재무건전성”이 적격성 요건으로 명시하고, 적격성 판단시 고려사항을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넓게 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금고 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영국은 형사상 유죄판결 외에 민사소송, 고발·고소 등도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는 파산선고 후 미복권을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데, 영국은 민사판결에 따른 금전채무의 미이행과 같은 것도 고려사유로 하여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의 항목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표 3>)와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에서 고려되는 사항이 우리나라의 임원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지(<표 4>)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우리나라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영국의 적격성 심사시 관련 항목

결격사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관련 항목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능력 및 역량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재무건전성

결격사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관련 항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직성, 진실성, 평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직성, 진실성, 평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직성, 진실성, 평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처분	정직성, 진실성, 평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직성, 진실성, 평판

〈표 4〉 영국의 적격성 심사에서 고려되는 사항이 우리나라 법상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항목	고려사항	우리나라 법상 존재 여부
정직성, 진실성 및 평판	형사상 유죄판결	O(금고이상의 형 집행 후 5년 경과 및 금융관계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집행 후 5년 경과)
	금융업 관련 위법행위, 사기 등과 관련한 민사상 절차	X
	감독당국, 거래소, 금융 관련 협회 등의 징계	△(감독당국의 징계)
	감독규정, 거래소규정, 협회기준 등 위반사항	X
	규제행위와 관련한 정당한 고소·고발, 민원	X
	등록, 인가, 면허 등 거부 또는 취소	X
	도산 기업 등에 관여	X

관련 항목	고려사항	우리나라 법상 존재 여부
	검사, 제재 등을 받은 기업에 관여	O(금융업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5년 미경과)
	이사 또는 경영직으로부터 해임	X
	감독당국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위하였는지 및 법적·감독적 요건의 준수의지	X
능력과 역량	수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교육 및 자격요건 구비	X
	경력, 교육이 수행할 업무를 위해 충분한지	X
	수행할 업무를 위해 충분한 시간투입	X
재무건전성	채무 관련 판결을 받은 후 미이행 잔액이 있는지 여부	X
	파산신청,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약 등	O(파산선고 후 미복권)

그리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확인할 의무와 선임 후 공시의무(협회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후 보고)를 가진다. 외국과 달리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후 자격요건 유무에 관하여 계속적 확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2.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방안

가.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

법률에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하여 적격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임원의 경우에는 고객의 자금을 보관·운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의 특성상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59),60)} 특히 현재 법령상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특히 업무능력과 경

59) 정순섭(집필대표), 「온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김정연 집필부분, 온주편집위원회, 2020. 11. 12.

60)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50 결정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하여금 5년간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직업선택의

험에 관하여 아무런 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데,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은행, 증권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금융 관련 업무능력과 전문성,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행 법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등이 가능해져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포함하여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다만 추상적인 문구로는 금융회사가 임원의 적격성 심사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외국에서 감독 규정 등을 통해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임원의 적격성 요건의 구체화 방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임원에 대하여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의성’과 같은 적격성 요건이 적극적으로 부과될 것인데, 어떤 경우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개정법률상 금융회사가 임원 선임시 대상자가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여야 하고(동법 제14조 제1항),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서 “이사의 자격요건: 상임이사·비상임이사·사외이사 각각의 결격사유 및 적극적 자격요건”이 포함되어 있다(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별표 1).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사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사항을 내부규범에 정하여야 하고, 이사 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어떠한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지침이 없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의 객관성과 적절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적격성 요건의 항목별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영국 등 해외 법제에서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다. 법시행과 함께 시행령을 마련하여 심사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감독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제시하여, 금융회사가 이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동 결정은 “증권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것이 요청되고 특히 금융관련법령의 위반행위는 국가경제에의 막대한 피해발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에 비추어 첫째, 그러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 추궁의 일환으로 임원자격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증권회사의 건실한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처벌전력에 내재된 성격이나 습성에 의하여 되풀이될 수 있는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처벌전력이 없는 깨끗한 경영진을 유지하여 대외적으로 신용을 확보함이 필요하므로 ...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

다. 감독당국의 직접적 개입 여부

(1) 적격성 심사주체

영국의 적격성 심사제도에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적격성 심사를 직접하여 사전승인을 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사전적 관여는 임원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관치금융의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늘 따라다녔다. 불과 수십 년 만에 고속 성장을 하면서 정부가 금융분야에 개입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에도 금융지주회사의 CEO 인선, 금융권 인사와 관련하여 관치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장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선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임원의 적격성에 관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감독당국은 심사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금융회사의 공정한 적격성 심사 확보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의 개입없이 자체적으로 임원의 적격성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면 자칫 심사가 형식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회사의 적격성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사 내에 적격성 심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등 독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지 적격성심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적격성 심사를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하나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고(동법 제16조 제1항),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동 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⁶¹⁾ 동 개정안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표이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을 금지하며, 위원회 2/3 이상(현행 과

6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48, 2020. 6. 29.

반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구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여 회사의 임원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²⁾

또한 회사의 적격성 심사 결과 적격성 미비를 이유로 임원 선임이 거절되거나 부적격을 이유로 임원이 해임된 경우 당사자가 이에 승복하지 못하는 때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사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 후 심사결과와 이유를 후보자에게 서면통지하고, 후보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사후 보고의무 강화

적격성 심사주체를 금융회사로 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임원의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3조 제2항).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어 금융회사 임원의 적극적 요건이 부과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임원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금융회사의 심사내용과 결과를 검토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확인함으로써 임원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적격성 확보 방안

(1) 벌칙 및 제재 강화

우리나라의 여건상 금융당국이 사전적으로 개입하여 적격성 심사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때, 금융회사가 스스로 적격성 심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적격성 요건의 구비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지만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서 벌칙이 경미하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검사 및 제재권한을 가지므

62) EU의 경우 신용기관에 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Joint ESMA and EBA 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the suitability of members of the management body and key function holders under Directive 2013/36/EU and Directive 2014/65/EU of the Guidelines 135).

로 금융회사 및 그 임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제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한 제재가 내려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금융지배회사구조법상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임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거나 부적격 임원을 선임한 경우 제재나 벌칙 수준을 높이고, 대표이사등에 대하여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부적격한 임원에 대한 조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임원이 적격하지 않더라도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격성 미비를 이유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직접적 방법은 없다. 이에 비해 영국은 감독당국이 기존에 부여한 허가를 철회하여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실효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요구되므로, 감독당국이 부적격한 임원을 직무에서 물러나게 할 권한을 가지게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해임요구 등 권한을 가진다면 부적격한 자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경영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적격성 심사의 주체가 되고 선임 후 적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시키거나 직을 상실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 선임 후 더 이상 적격하지 않게 된 사람은 금융회사가 해임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V.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 임원선임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몇 가지 임원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를 추천받아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검증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여타 일반 회사와 같이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 회사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자칫 금융회사의 영업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지만, 금융회사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인맥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직 임원으로 선임되기도 하고, 펀드 불완전판매나 거액의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회사의 부실경영시 그 손해는

일반 공중에 미치게 되어 적격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은 해외 국가와 비교하여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영국처럼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고 사전에 허가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회사가 공정하게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할 것을 법상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 요건을 부과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동 개정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또는 직책변경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개정법률은 이러한 일반 규정 외에 적격성 요건 및 그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실제 심사시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법시행과 함께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적격성 심사시 검토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임원으로 선임된 후 적격하지 않음이 드러난 때에는 해임하도록 하며, 금융회사의 임원 적격성 심사 의무 위반시 제재 및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논문접수 : 2023. 11. 30. / 심사개시 : 2023. 12. 29. / 게재확정 : 2024. 1. 19.)

참 고 문 헌

[국내 자료]

- 정순섭(집필대표), 「온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김정연 집필부분, 온주편집 위원회, 2020. 11. 12.
- 고상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124376 호)”, 정무위원회, 2023. 11.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3. 3/4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결과”, 2013. 12. 13.
-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2023. 5. 10.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 2023. 6. 22.
- 이영경, “해외의 금융회사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와 시사점”, 「KIF 연구보고서」 2023-06, 한국금융연구원, 2023. 11.

[해외 자료]

- Bovill, “Only 34 investigations and one enforcement action after four and a half years of SMCR”, 2020. 10. 27.
- <https://www.bovill.com/uk-europe/only-34-investigations-and-one-enforcement-action-after-four-and-a-half-years-of-smcr/>
- FCA, “Extending the Senior Managers & Certification Regime to insurers”, Policy Statement, 2018. 7.
- _____, “The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Guide for FCA solo-regulated firms”, 2019. 7.
- _____, “Decision Notice: Markos Markou and Financial Solutions (Euro) Limited”, 2021. 1. 29.
- _____, “Final Notice: Jon Frensham”, 2021. 9. 17.
- _____, “Final Notice: Anthony George”, 2021. 9. 24.
- _____, “Final Notice: Shaffarat Parvez”, 2021. 10. 6.
- _____, “Final Notice: A & A Windows Direct Limited”, 2021. 11. 5.
- _____, “Final Notice: Ashkan Zahedian”, 2022. 11. 14.

____, "Final Notice: Charles Breeden in Motor Company Ltd", 2022. 3.

____, "Fit and Proper test for Employees and Senior Personnel sourcebook", 2023. 3. 29.

____,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last updated 2023. 3. 30.

<https://www.fca.org.uk/firms/senior-managers-certification-regime>

Grania Baird·Katy Ruddell, "Overview of the Senior Managers & Certification Regime for FCA solo-regulated firms", FARRE&Co, 2019. 7. 19.

<https://www.farrer.co.uk/news-and-insights/overview-of-the-senior-managers-certification-regime-for-fca-solo-regulated-firms/>

Parliamentary Commission on Banking Standards, "Report of the Parliamentary Commission on Banking Standards - Changing banking for good", First Report of Session 2013 - 14, 2013. 6. 12.

PRA, "Evaluation of the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2020. 12.

Abstract

Legal Issues regarding examination of the qualifications for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 Focusing the Fit and Proper Test of U.K. -

Lee, Young-Kyung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ongoing social controversy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executive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particularly regarding the issues such as the CEO succession i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parachute appointments, and financial accidents. In order to ensure that qualified individuals who can best serve shareholders or societal interests are appointed as the executive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support this goal.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Fit and Proper Test', which is a system implemented by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n many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U.K.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executive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reviews the details about the Fit and Proper Test of U.K. including the requirements of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status of operation, etc. In Korea,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tipulates the requirements of the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same law, there are not any positive requirement regarding suitability for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except for outside directors. It only provides for certain disqualifications for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result, a financial institution can appoint an officer only after checking such disqualifications. It also requires for a financial institution to check the requirements of officers and report about the appointment immediately to the FSS. If a financial institution does not perform such obligations, it wi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which is not sever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 society, it should be necessary to impose strict requirements to secure the fitness and propriety of their officers. In this regard, the recent passage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Amendment to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which imposes positiv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n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highly commendable. The amended law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officers meet the criteria of expertise, work experience, honesty, and integrity when appointing or changing their positions. However, the amended law does not specify detailed criteria other than these general provisions, leaving room for discre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when assessing the fitness and propriety of officer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enforcement decrees or supervisory regulations to establish specific standards on matters to be reviewed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assesses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officers. Moreover, in order to ensure that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fit and proper for their roles, it would be essential to tighten penalties and sanction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f they fail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verify, report, and disclose the qualifications of their officers. In addi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utilize an independent committee to fairly conduct qualification assessment for offic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implement measures to dismiss the officers if they are no longer deemed qualified after the appointment.

Key Words : Financial Institution, Officer, Fit and Proper test, Qualifications for officers,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